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2. 22.(수) 배포</p>	
보도일	<p>2021. 12. 22.(수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22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
담 당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과장 강정자	사무관 윤여진 (☎ 044-203-7256)
	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	과장 송근현	서기관 김민선 (☎ 044-203-6918)
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	과장 김지연	사무관 이설희 (☎ 044-202-3531)
	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	과장 이정미	서기관 정현욱 (☎ 044-203-2631)
	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과장 정태경	사무관 조현성 (☎ 044-203-3112)

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「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(안)」 발표
- ◆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,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
- ◆ 지역가치의 보존과 창조를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「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 기본계획」 수립
- ◆ 「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」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31개 과제 지속 추진 중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2월 22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

-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,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.
- 우선,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·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하고, 자율혁신대학에는 대학별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.
 -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,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주요 계획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.

- 우선,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‘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’을 발표하고,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.
- 다만,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, 학생 충원을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할 예정이다.
-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(대학혁신지원사업)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.
 - 이를 위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(2022~2024년)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.
 - 한편, 권역별 유지충원을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여,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.
 - ※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(2021.12월 말 예정) 내 유지충원을 점검 지표 구성 요소 및 산정 방식 안내 예정
- 이와 함께, 운영 손실,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.
 -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·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편,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,지자체-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’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 ‘플랫폼’으로 확대한다.
 - 아울러,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‘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’도 12월 말 지정·발표할 예정이다.

-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 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, 대학의 체제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
-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.

<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LIFE) 확대·개편(안) >

구분		현행	개편(안)
참여단위	일반대	학과·학부·대학	⇒ 단과대학
	전문대	학과·학부	
입학전형	정원내	연령기준 전형	⇒ 학칙에 따른 자율 선발
	정원외	재직자 전형/만학도 전형	
교육과정		-	· 사전 학습 학점인정 활성화 · 교육과정별 이수증/자격증 발급

- 또한,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·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함으로써,
-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,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

-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치매관리 지원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,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다.
-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.
 -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부터 진단, 사례관리, 가족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*하고, 전문 치료와 돌봄을 위한 치매안심병원·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확충**하였다.

*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60%(50만 명)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(2021.11월 기준)

** 치매안심병원: 6개소 / 치매전담형 요양시설: 115개소 신설, 282개소 전환(2021.11월 기준)

-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(인지지원등급)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다.
-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을 최대 10%로 줄이고, 치매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*를 가져왔다.

*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83%(1,300명 대상, 2021.8월)

**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(AIP) 지속 증가: (2018) 76.7% → (2020) 85.1%

□ 앞으로의 치매정책은 이러한 성과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,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.

- 먼저, 치매안심센터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, 예방 - 치료 - 돌봄을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'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'이 되도록 고도화*한다.

*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, 시스템 간 연계,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

- 또한, 지역사회 거주 중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 재가급여 도입*·신규 재가서비스** 확충 등을 추진하고,

* 6가지(목욕 등) 중 선택이용만 가능 → 혼합·이용 / ** 단기보호, 수시방문, 이동지원 등

- 경증·관리환자 대상의 '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' 시범사업과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,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·의원 체계를 구축한다.

- 마지막으로,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도록 '치매'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.

※ 보건복지부,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(12월 22일) 예정

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기본계획

- 이번 안건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2021.1.1. 시행)에서 ‘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기본계획 수립(5년 주기)’을 의무화함에 따라,
 -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.

< 과제 주요내용 >

추진전략	주요 추진 과제
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	①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②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③ 소실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 ④ 지역문화, 역사교육분야 역할 강화
지속 가능 기반 구축	⑤ 지방문화원 자체 재원 마련 지원 ⑥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설·예산 지원 강화 ⑦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
혁신 역량 강화 지원	⑧ 문화원 연합회의 지원기능 강화 ⑨ 시도연합회의 광역단위 사업·정책소통 거점화 ⑩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강화 ⑪ 운영표준 마련 등을 통한 문화원 혁신역량 강화

※ 문화체육관광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(12월 22일) 예정

「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」 3차 점검

- 본 안건은 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」(문화체육관광부·교육부, 2.24.)의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이다.
-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‘징계정보시스템’을 구축하고, 근거 법률(「국민체육진흥법」 등 4건) 개정*을 진행 중이다.

* 「국민체육진흥법」 2건(임오경·이달곤 의원안)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(12.9.)
 「학교체육진흥법」(임오경 의원안)·「학교폭력예방법」(정청래 의원안), 교육위원회 계류 중

○ 이러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징구하여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(2021.11월~).

※ 법 개정 시(예시) : (학교) 학폭법에 따른 가해 학생선수 조치결과 정보 제공 → (스포츠윤리센터·문체부) 징계 등 처분 요구 → (종목단체) 대회출전·등록제한 조치

○ 아울러, 오는 연말까지 시스템상 가해학생 징계 정보 보존 기한 설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완료하고, 내년 이후 관계기관 통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.

□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 조치하도록 '표준운영규정'을 제시했으며(2021.12월), 실업팀의 운영규정 마련 여부를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 공모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(2022~).

□ 또한,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,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*을 부여한다(2022~).

* 평가지표 중 '학생선수 운영 관리 및 지원 -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적정성'

□ 아울러, 내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(5명)과 지역사무소 확충(2개소)을 추진하고, 인권교육 플랫폼을 구축(~2022.4월 예정)하는 등 스포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해서 추진한다.